

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□ 개요

○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□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【정관 제8조 4호 개정】

(제122회 이사회, 2024.10.31.)

○ 변경 사유: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정관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(서울특별시 조례 제9246호, 24.05.20.) 개정사항 및 서울시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(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8173, 24.08.01.)을 반영하여 진흥원 노동이사 정수 개정
- (기존) 노동이사 2명 이내 ➡ (개정) 1명

○ 변경 내용: 정관 제8조 4호 개정

현 행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4.03.20>
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개정 2017.09.27>
2. 삭제 <2017.09.27.>
3. 상임이사 2명 이내 <신설 2020.3.30.>
4. 노동이사 2명 이내 <신설 2020.12.29>
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17.09.27., 2020.3.30., 2020.12.29>
6. 감사 2명 <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
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27., 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



개 정 (안)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4.03.20>
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개정 2017.09.27>
2. 삭제 <2017.09.27.>
3. 상임이사 2명 이내 <신설 2020.3.30.>
4. 노동이사 1명 <신설 2020.12.29., 개정 2024.10.31.>
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17.09.27., 2020.3.30., 2020.12.29>
6. 감사 2명 <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
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27., 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

【정관 제38조 개정】

(제122회 이사회, 2024.10.31.)

○ 변경 사유: 정관의 변경 절차 관련 문구 명확화

- 「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」 제6조(정관)에 의거 정관 변경 시, 시장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바, 관련 사항을 정관에도 반영

○ 변경 내용: 정관 제38조 개정

현 행
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,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(개정 2015.08.26, 2017.09.27)



개 정 (안)
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<u>의결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,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/u> (개정 2015.08.26., 2017.09.27., 2024.10.31.)

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변경(안)

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4.03.20>

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개정 2017.09.27>
2. 삭제 <2017.09.27.>
3. 상임이사 2명 이내 <신설 2020.3.30.>
4. 노동이사 1명 <신설 2020.12.29., 개정 2024.10.31.>
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17.09.27., 2020.3.30., 2020.12.29>
6. 감사 2명 <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
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<신설 2017.09.27., 개정 2020.3.30., 2020.12.29.>

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,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<개정 2015.08.26., 2017.09.27., 2024.10.31.>

부 칙 (2024. 10. 31)

이 정관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 (0000.00.00.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4.03.20> 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개정 2017.09.27> 2. 삭제 <2017.09.27.> 3. 상임이사 2명 이내 <신설 2020.3.30.> 4. 노동이사 2명 이내 <신설 2020.12.29> 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17.09.27., 2020.3.30., 2020.12.29> 6. 감사 2명 <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 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27., 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	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4.03.20> 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<개정 2017.09.27> 2. 삭제 <2017.09.27.> 3. 상임이사 2명 이내 <신설 2020.3.30.> 4. 노동이사 <u>1명</u> <신설 2020.12.29., 개정 2024.10.31.> 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17.09.27., 2020.3.30., 2020.12.29> 6. 감사 2명 <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 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27., 개정 2020.3.30., 2020.12.29>
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,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5.08.26, 2017.09.27>	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<u>의결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,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/u> <개정 2015.08.26., 2017.09.27., 2024.10.31.>